

비케이브 윤리경영 실천지침

비케이브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'윤리경영 실천지침'(이하 "본 지침"이라 한다)을 공지하오니, 본 지침에 따른 윤리경영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고객, 주주 및 투자자, 경쟁사, 협력업체 및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제3조 (임직원의 준수 의무)

임직원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본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위반사항의 제보)

- ① 본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알리고, 회사는 이의 사실여부를 성실히 조사하고 확인합니다.
- ②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밀히 비밀 보장되며, 제보자는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
제5조 (별도 규정의 제정)

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사규, 규정 등에 우선하여 따르기로 하며, 회사는 필요 시 별도의 규정 내지 준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제6조 (국내외 법규의 준수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과 국가, 지역사회의 제반 법령을 준수합니다.
- ② 임직원은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노력합니다.

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

제7조 (고객만족 및 고객보호)

- ① 임직원은 지속적인 디자인, 상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고객만족 실현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- ② 임직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 4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

제8조 (주주권익보호)

- ① 임직원은 지속적인 원가절감, 신사업/브랜드의 발굴,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 및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.
- ②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하며, 주주 및

투자자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제 5 장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책임

제9조 (공정거래준수 및 부정청탁 등 금지)

- ① 임직원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협력업체, 거래처를 선정하여야 하며, 경쟁사 및 협력사, 거래처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② 임직원은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부정청탁, 금품·뇌물수수, 접대/향응, 고용/취업알선 등 비윤리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6 장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

제10조 (임직원의 책임과 자세)

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거래처/협력회사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일체의 불공정거래행위, 부정청탁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.

제11조 (회사 자산의 보호)

임직원은 업무상 지득,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 및 회사의 자산, 재산을 회사의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무단 반출, 유출, 횡령하지 아니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12조 (건전한 조직문화 조성)

임직원은 회사 내 상/하, 동료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삼가하여야 하며, 직장동료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상호신뢰를 통한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.

제 7 장 윤리상담·신고 및 제보자 보호

제13조 (윤리상담, 신고 및 제보자보호)

- ① 법무팀은 회사 내 윤리 담당부서로서 임직원의 윤리상담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습니다. 법무팀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·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사 담당부서장과 의 협의를 통해 법률적 지원 및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상담·신고자의 신분,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,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
<부 칙>

[시행일] 본 지침은 2025년 8월 1부터 시행합니다.

주식회사 비케이브

